

문서번호	행정지원실 -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8. 5. 30.
공개여부	공 개

팀원	팀장	실장	원장
5/30 노성익	남계선	대결	김원석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18년 제3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 재 단 법 인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18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재 단 법 인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개 요>

- 일 시 : 2018. 5. 28(화) 16:00 ~ 17:10
- 장 소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층 교육장
- 참석임원 : 10명(이사 8명, 감사 2명)

- 이 사

- 윤 동 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참석
- 김 흥 제 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장학사 대리참석
- 장 효 순 충남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계장 대리참석
- 이 상 백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초빙교수 대리참석
- 김 민 호 (사)충청남도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이사장 참석
- 이 철 이 사회복지법인 청로회 대표이사 참석
- 이 종 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참석
- 박 진 규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참석

- 감 사

- 이 용 문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장 참석
- 노 문 섭 천안아산공인회계 협의회장 참석

- 간 사

- 오 원 석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행정지원실장

- 경 과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보고안건 ⇒ 부의안건 심의·의결

○ 보고안건

1. 진흥원 이전관련 입지 선정의 건
2. 서면결의로 진행한 제2차 임시이사회 결과 보고

○ 부의안건

1.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 제2회 사업계획변경(안)
3.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4.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5. 진흥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6. 진흥원 임원(비상임 이사)의 연임승인 및 신규 선임(안)
7. 진흥원 기명이사 선임(안)
8.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진흥원 이사회 추천인 선임(안)

참석자 소개 및 성원 보고

○ 간사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제3차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임시이사회 사회를 맡은 진흥원 행정지원실장 오원석입니다.

이번 임시이사회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오늘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님과 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윤동현 이사님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방향입니다.

- 먼저, 당연직 이사이신 윤동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 송태화 이사님을 대리하여 이상백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초빙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당연직이신 조기성 이사님을 대리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인성인권팀의 김홍제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 당연직 감사이신 이용문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감사이신 노문섭 천안아산공인회계사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이사이신 이종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이사이신 박진규 호서대학교 청소년 문화상담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당연직이신 이영우 이사님을 대리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의 장효순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이사이신 이철이 사회복지법인 청로회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 김민호 이사님은 참석을 하실 건데요, 동사무소에서 서류 떼는 게 늦어져서 좀 늦으실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송태화 이사님은 개인 일정으로, 손진희 이사님은 학과 수업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석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복지센터 이미원 센터장입니다.
- 활동진흥센터 박영의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열한 분의 이사님 중 현재 여덟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으므로 진흥원 정관 제17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장의 직무대행에 대해 명시된 진흥원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이사장이신 남궁 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님을 대리하여 운동현 충청남도 여성가족 정책관님께서 2018년 제3차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임시이사회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개회선언

○ 이사장 대행 운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18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대행 운동현

이사님들하고 감사님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도는 사실 지사님께서 현재 공백상태이고, 또 여기 진흥원은 원장님께서 공백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기관장의 공백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사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안정감 있게 잘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껏 참석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오늘 안건은 보고안건 2건하고,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총 8건입니다. 오늘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앞으로 청소년진흥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희 행정부지사님께서 오늘 일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임시이사장을 맡게 됐는데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보고안건

○ 이사장 대행 윤동현

보고안건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첫 번째 진흥원 이전관련 입지 선정의 건, 두 번째 서면결의로 진행한 제2차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등 2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사님들 이견 있으신가요?

○ 이사 일동

없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없으시므로 진흥원 이전관련 입지 선정의 건과 서면결의로 진행한 진흥원 제2차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간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지난 3월 13일 제1차 임시이사회 이후 진행된 업무 중 중요사항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진흥원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배경 및 그간의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전 대상은 진흥원의 행정지원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1실 2센터와 상담복지센터 부속 진로직업체험시설 꿈빠가 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주관한 입지선정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유치 신청을 하였으나 최종 심사결과 예산군에서 제공한 부지로 결정되었으며, 2년을 기간으로 10쪽 그림의 11시 방향 정도의 표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교읍 신리에 있는 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정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전 규모에 대해서는 충남 종건소와 협업으로 실시설계를

거쳐서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아산권으로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천안성문화센터는 별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제2차 임시이사회 진행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행안부로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자 처벌을 위한 임직원 징계 등 자체 규정을 4월 말까지 정비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진흥원 인사규정에 상근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여 시급하게 이사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된 안건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과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이었으며, 진흥원에서 제안한 개정내용은 유인물 11쪽부터 16쪽까지의 붙임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석인 진흥원 원장을 제외한 이사 열 한분 중 아홉 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으로써 규정개정이 4월 27일에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간사가 보고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노문섭

그러면 2020년 정도에 이전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간사 오원석

일단은 이전설계비라든가 이전예산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도의회가 개최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예산반영이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예상으로는 2020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이게 이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이사님들 안계십니까?

○ 이사 박진규

이전 관련해서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것이 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배정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 간사 오원석

지금 보고드린 것은 충남도청에서 주관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이사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 이사 박진규

그러면 예산확보는 되는 건가요?

○ 간사 오원석

예산은 충남도의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다른 질의하실 이사님들 안계십니까?

○ 이사 일동

없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심의 및 의결사항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자, 다음은 심의 및 의결사항입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될 안건으로는

- ①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② 2018년 제2회 사업계획변경(안)
- ③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④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⑤ 진흥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 ⑥ 진흥원 임원(비상임 이사)의 연임승인 및 신규 선임(안)
- ⑦ 진흥원 기명이사 선임(안)
- ⑧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진흥원 이사회 추천인 선임(안) 등 총 8건입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추경(안)과 사업계획변경(안), 규정 개정 및 제정(안), 비상임 이사 연임 및 신규 임원 선임(안), 기명이사 선임(안) 및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일괄 상정한 후 논의했으면 하는데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사 일동

좋습니다.

제1부의안건, 제2부의안건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의해주시는 것을 알고, 제1부의안건인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제2회 사업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간사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을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 및 학력인증 시범사업 위탁기관 운영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 또한, 흥성성문화센터가 충남도에서 주관한 2018년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에 그림자극을 이용한 성평등교육 아이템을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고,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림자극은 현재 내부 시연 및 평가회를 거쳐 충남 서부권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료집 19쪽입니다.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사업비 편성, 행정지원실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했던 금액을 채용이 확정됨에 따른 인건비로의 반영, 기타 세부사업간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세입부를 말씀드리면 총 54억 9,929만 6천원에서 56억 2,413만 6천원으로 1억 2,484만원 증액으로써 국도비보조금 중 교육청 800만원, 타기관지원사업 중 도교육청 1억 1천만원, 학교폭력대응 솔리언포래상담사업 684만원 등입니다.
- 세출부는 세입부와 동일한 1억 2,484만원 증액으로써 세입부에서 말씀드린 사업비 관련 내용이 세출부에 반영되었으며, 예비비 중 6,1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중 급여 3,600만원 증액, 제수당 1,000만원 증액, 퇴직급여 400만원 증액, 법정부담금 400만원 증액, 기타 복리후생비 7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세입 및 세출총괄부, 수입 및 지출예산명세는 자료집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진흥원에서 제안한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이사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김홍제

인원이 이번에 느는 건가요? 인건비는 똑같고, 인원이

○ 간사 오원석

예, 인원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행정지원실 두 명을 채용 예정이었습니다. 인원에 맞춰서 예비비로 신청을 했었는데 올 2월 1일자로 행정실 직원이 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예비비에서 그대로 인건비 항목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 이사 박진규

우리 오원석 실장님이 말씀을 굉장히 빨리 하시네.

○ 간사

죄송합니다.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박진규

빨리하시고,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 봐주세요.

센터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그래서 사업계획이랑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 행정실은 예비비로 편성됐던 내용을 티오를 확보해서 채용이 확정됐기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 간사 오원석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실장님, 자료 미리 다 드리셨던 거죠?

○ 간사 오원석

예

○ 감사 노문섭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이런 건 검정고시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 간사 오원석

예, 교육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공모를 했었고, 저희 진흥원의 상담복지센터에서 응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저희 관할센터장이 있으니 설명을,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 센터장 이미원

여기 앉아서 해도 되나요?

○ 간사 오원석

예.

○ 센터장 이미원

네, 상담복지센터장 이미원입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시범사업은 올해 교육부에서 몇 개 시도에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교육부 사업을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 이, 의무교육단계이니까 중학생까지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마치지 못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학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인터넷강의나 이런 시범 운영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맡았고요, 저희 청소년진흥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개 시·군에 있는 학교 밖 센터와 함께 진행해서, 중학생 이전의 아이들에 대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아이들 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운영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사 이종원

양성평등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 간사 오원석

홍성성문화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사 박진규

이것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거?

○ 센터장 이미원

성문화센터가 별도로

○ 이사 박진규

아!

○ 이사 이철이

타기관지원사업은 뭐예요?

○ 이사장 대행 윤동현

타기관지원사업이 뭐냐고 하시네

○ 이사 이철이

여기에서 타기관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 간사 오원석

아닙니다. 타기관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이사 이철이

타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 간사 오원석

교육청도 되고요, 한청원이라고 부르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받고 있고요, 사업비를.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 이사 일동

없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제1부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없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없으시므로 제2부의안건인 2018년 제2회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이사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 간사 오원석

예

○ 이사장 대행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제2부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없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제1부의안건인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제2회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청소년진흥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예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제2회 사업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봉 3타

제3부의안건, 제4부의안건, 제5부의안건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제3부의안건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제4부의안건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제5부의안건 진흥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간사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줌...

○ 간사 오원석

- 먼저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혁신담당관실에서 충남 출자·출연기관 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없는 저희 청소년진흥원, 문화재단, 문화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네 개 기관에 수당항목을 신설해서 지급하도록 한 지침에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수당신설에 대한 협조결재를 득한 후에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용어의 변경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한테 받는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등을 통칭하여 임금이라고 하는데 규정이 오래되다보니 예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제목을 포함하여 규정 내에 포함된 보수라는 단어를 임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4부의안건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하는 절차로써 기명날인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전체가 날인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진흥원처럼 기명이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는 기관도 상당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의장인 이사장님 및 이사장님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과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이사장님이 지명하는 2인과 감사의 날인을 받아 행정지원실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사회 참석률이 높은 이사를 선임하여 2년 단위로 지명했으면 합니다.
- 5부의안건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진흥원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드리는 내용은 근참법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운영규정 샘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의결을 해 주시면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인 각각 4인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정 제25조에 있는 협의 사항을 근로자와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진흥원에서 제안한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이사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이상백

예, 제가 질문을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이사님

○ 이사 이상백

보수규정 일부개정 중에서 주요내용에 보수를 임금으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변경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 간사 오원석

제가 주요 내용에 써 놨습니다만, 워낙 단어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 이사 이상백

나머지를 다

○ 간사 오원석

네, 단어 자체를 다 바꾸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2조와 제27만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어서 명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시면 보수라는 단어자체를 임금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 제목을 포함하여 내용에 있는 전체를 바꾸고자 합니다.

○ 이사 이상백

현재 이 안에 나와 있는, 그 책자에 지금 주신 거, 그 내용은 표현은 없으시지만 제안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2조에서도 '임직원의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여기다 써 줘야 '아 변경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표시를 안 하셔서 제가

○ 간사 오원석

아마 그냥 주요내용 두 번째에 용어의 변경 기존 보수 변경 임금, 이 밑에 이제 '규정의 제목부터 내용에 있는 모든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함'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이상백

예, 알겠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이사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시네. 용어만 변경이 되는거죠?

간사 오원석

예, 그렇습니다.

○ 이사 박진규

그 6항, 신설된 거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서울특별시를 특별히 기준으로 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 간사 오원석

공무원 수당규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도. 그래서 그것을 좀 준용을 했습니다.

○ 이사 박진규

아, 충청남도도 있는데, 충청남도도 이 규정을 따르나요?

○ 간사 오원석

따로 이 말 자체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사 박진규

서울시가 제일 많이 주나요?

○ 간사 오원석

그것은 따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사 박진규

공립학교에서 서울시에 있는 학교 기준이다?

○ 감사 노문섭

그럼 한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전액이 아니고?

○ 간사 오원석

네, 아무래도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이 기준에 따라서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사 박진규

서울특별시도 매년마다 한도액을 정하고 있나요?

○ 간사 오원석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이사 이상백

5부의안전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그냥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시죠.

○ 이사 이상백

31페이지의 6조에 보시면 제2항에 사용자 위원,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 위원이 지금 네 분이신데. 그 네 분 중에 이번같이 원장께서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이 넘어가잖아요. 이것은 이 규정하고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뭔가 거기를 요렇게 맞춰주는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0일로 딱 해 놓으면 지금 원장 공석이 30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상태면 이 문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 간사 오원석

실질적으로 근참법에 따라서 이 규정이 샘플로 올라와 있고, 운영규정을 준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방금 이상백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사항이 없어서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민호 이사 입장)

○ 간사 오원석

이상백이사님, 그럼 단서를 달면 어떻겠습니까?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6조 2항을 하고 단, 사용자 위원은 어~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일동 웃음)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이것은 연구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왜냐면, 지금 1항과 2항이 서로간에 불일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협의회 운영 자체가 사실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간사 오원석

김민호 이사님 오셨으니까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 이사 김민호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가 쟁점인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 간사 오원석

어떤거냐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조 2항에 '사용자 위원 또는 근로자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법령과 본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같은 경우 사용자 위원이 원장, 실장, 그 다음에 센터장 2명. 이렇게 총 4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진흥원 원장이 공백상태가 50일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서로 좀 규정이 충돌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이게 지금 급한가요?

○ 간사 오원석

아, 제정하는거요?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제정하는게?

○ 간사 오원석

이미 좀 늦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상시근로자 30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이 먼저 제정이 되어야 그 규정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문제제기 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7월 정도에 예정된 이사회 때

○ 이사장 대행 윤동현

다음 이사회 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센터장 두 분하고 딱 네 분인데, 지금 간부급들을 이렇게 보고 이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한 건데, 또 실질적으로 사용자측의 대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는 또 어떻게 했는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부인을 갖다 앉힐 수도 없는 문제고.

○ 간사 오원석

그렇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내부인을 또 지정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 간사 오원석

사용자위원은 내부 규정에 명시를 해 놓고요, 근로자 위원만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그러니까

○ 이사 김민호

제가 의견 하나만 드리면, 사용자 위원도 이렇게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이제 회사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진흥원, 재단법인의 사용자 위원이라고 한다면 이사장과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요. 원장이 아니라 이사장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서 상 사업주가

이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체를 제 생각에는 사용자 측의 구성원을 바꾼다면, 요거만 손질을 한다면 나머지는 그대로 뒤도 되지 않을까. 즉, 이사장 및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결원이 생기면 위촉권을 쓴다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위촉을 해지하고 다시 재위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 간사 오원석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호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제5조 1항에 있어서 사용자 측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1,2,3,4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김민호이사님 의견은 사용자 측의 구성원은 이사장과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3인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고 1,2,3,4호는 삭제하는 형태로

○ 이사 김민호

예

○ 이사 이상백

저, 의견 있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자유롭게 하십시오.

○ 이사 이상백

지금 김민호이사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이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포함이 되면 이사장께서 원래 당연히 와야 되는데 항상 위촉하고, 위촉하고 어떤 애매한 부분이 있고.

연속성 부분에서도 특히,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이제 뭐 이사장님, 그 다음 또 재위임, 위임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안전을 할 때 서로 연속성이나 뭐 이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정해서 가는 것도, 왜냐면 여기에 직책 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상태이고, 오늘 이게 제정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6조 2항에 30일 이내에 이 부분만 빼고 빨리 처리를 하시고, 다음번에 문구 조정을 7월에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또 그때 가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넘기고 넘기도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 상태에서 준비해서 오실 것 아닙니까, 또? 또 이상태가 발생을 하면 7월에 가서 또 뒤로 넘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약간, 현재 여기에서 문제 발견된 부분만 조금 빼거나 이렇게 하고, 의결을 한 다음에 7월에 문구조정이나 기타 수정안건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사 오원석

지금 이상백이사님 말씀은 5조 1항과 2항은 그대로 두고, 6조 2항에 사용자 위원 또는 근로자 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법령과 본 규정에 따라서... 여기에서 30일 이내라는 단어를 삭제할 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 이사 이상백

저는 뭐, 확실히 7월로 넘기지 말고 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난데, 실질적으로는 이 안의 내용을 같이 검증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이 이사 중에 새로 선임해서 하실 것인지, 그럼 7월에 의결을 올려서 설명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또 안에서 보시다보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7월에 가서 혹시 또 연장하는. 그것이 괜찮으시면 7월로 넘기시던지, 아니면 일부 수정을 해서 넘어가시던지.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간사 오원석

규정이 한 번 제정이 되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에 따라 구성을 해야 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변경된 규정 자체를 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의견주신 것처럼 저희가 법률전문가라든가 노무사님들한테 더 자문을 받고 보완을 해서 7월에 다시 한 번 부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이사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사 이상백

예, 동의하고요. 추가적으로 16조에 보면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직원이 4~50명 정도 되는데 그럼 중복도 가능한 겁니까?

○ 간사 오원석

예, 중복추천이 가능한 것으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 이사 박진규

사용자 위원이 이사장인지 원장인지

○ 이사 김민호

이사장이 맞습니다.

○ 이사 박진규

이사장이 상시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데

○ 이사 김민호

이사장이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규정 상 이사장이 사용자 위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그러면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사님들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하고도 논의를 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한 달 뒤에 의결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부결하고 다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 간사 오원석

예, 다음 이사회가 7월 25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완벽한, 내용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그러면, 3,4,5까지 다 검토가 된 건가요? 다른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사 있음)

○ 이사 박진규

제가 좀.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예.

○ 이사 박진규

제3부의안건은 결국 용어 수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학비보조수당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부의안건은 기명이사, 다른 말로 한다면 원외이사를 선임하는 것 같고

○ 간사 오원석

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이사 박진규

기명이사라는 것이요, 기명이라는 무슨 뜻으로 붙인 거예요?

○ 간사 오원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회의록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날인이 돼서 이사회 회의록의 공신력을 갖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나중에 녹취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녹취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작성된 녹취록이 일치하는지 검토를 하게 되고요.

기존에 저희 진흥원에서는 2년 임기로 기명이사를 선임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세 분께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이, 내용 자체가 저희 규정에 미비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를 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두 분, 감사 중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를 하고, 이 작성된 회의록이 적정하다라고 날인을 해 주시는 이사님을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 이사 박진규

이 말을 제가 몰라서

○ 간사 오원석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도 이 말을 똑같이 쓰고 있어서 저도

○ 이사 박진규

그리고 다음 안건은 다음에

○ 간사 오원석

예, 5부의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자, 추가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 이상 일동

없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상 일동

예

○ 이사장 대행 운동현

이의가 없으므로 제3부의안건 보수규정 일부개정(안)과 제4부의안건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은 청소년진흥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5부의안건 진흥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예

○ 이사장 대행 운동현

이의가 없으므로 제3부의안건 보수규정 일부개정(안)과 제4부의안건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은 진흥원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을 하고, 제5부의안건 진흥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봉 3타

제6부의안건

○ 이사장 대행 운동현

제6부의안건으로 비상임 이사인 진흥원 임원의 연임승인 및 신규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대행 운동현

간사께서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진흥원 임원, 이사님과 감사님을 포함합니다. 임원 중 선출직인 일곱 분의 이사님과 한 분의 감사님이 2018년 5월 28일, 오늘까지가 임기입니다. 이렇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관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실에서는 2018년 5월 28일로써 임기가 종료되는 총 여덟 분의 임원 중 다섯 분의 이사님과 한 분의 감사님은 이사회 참석률, 의견개진율, 본인의 연임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이 타당하다고 도 주관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연임을 포함하여 4년 임기가 종료된 송태화, 이종원 두 분의 이사님에 대해서는 신규 선임계획안을 이사장님 결재를 득한 후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인물 40쪽 하단에 있는 절차를 거쳐 별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접수기간 중

응시한 다섯 분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진흥원 인사위원회 서류심사를 통하여 세 분을 선임하였고, 이를 이사장님께 결재를 품의하였습니다. 5월 25일 이사장님께서서는 최종 2인을 결정하였기에 결정된 2인에 대한 신규 선임(안)을 오늘 이사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진흥원은 신입으로서 임기가 종료된 강인영, 김민호, 박진규, 손진희, 이철이 이사님과 노문섭 감사님에 대하여 연임승인을 이사회에 요청드리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선발된 이상백님과 이해리님을 진흥원 신입 이사로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사 연임(안) 의결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김민호, 박진규, 이철이 이사님께서서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신규임원 선임(안)에 대해서는 이상백이사님이 제척사유에 해당되지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자, 부의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이사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사 있음)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예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부의안건 진흥원 임원의 연임승인 및 신규선임(안)에 대하여 청소년진흥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예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흥원 임원의 연임승인 및 신규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봉 3타

제7부의안건, 제8부의안건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이어서, 제7부의안건 진흥원 기명이사 선임(안)과 제8부의안건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진흥원 이사회 추천인 선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간사께서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먼저 진흥원 기명이사 선임(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오늘 제4부의안건으로 의결된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에 따라 이사장님께서 기명이사 및 감사를 지명해주셔야 합니다. 기존 2년 동안은 강인영 이사님과 김민호 이사님, 노문섭 감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사회 종결 후 녹취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의록에 대한 검수이니만큼 행정 지원실에서 찾아뵙기 쉬운 분으로 선임을 좀 부탁드립니다.
- 원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진흥원 이사회 추천인 선임(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흥원 원장이 4월 9일부터 공석입니다. 본 규정에는 임기만료 2개월 전, 또는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원장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만, 지난 3월 13일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원장의 선임절차를 향후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그 동안은 행정지원실장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관련규정에 따라 오늘 이사회에서 신임 원장 선임을 위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천위원회는 진흥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이 중에는 진흥원 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진흥원 몫의 추천위원을 추천해주시면 도청과 도의회에 각각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위원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진흥원 원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관련 전문가, 청소년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역임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기관운영 및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청소년의 보호육성을 위해 헌신, 노력, 발전시킬 수 있는 자입니다. 다만,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될 수 없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진흥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는 꼭 진흥원 이사일 필요는 없지만 진흥원 운영에 이사님들만큼 관심이 많은 분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 분은 이사님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추천을 통해서 선임을 했으면 합니다. 외부전문가 또한 진흥원 운영과 청소년업무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 중에서 합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이사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기명이사 선임건이야 뭐,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실 것 같기 때문에

○ 간사 오원석

예, 바로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바로 기명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사 일동

없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명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검수한 후 기명날인을 해주실 이사님 계시면 자천을 하셔도 좋고요,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의 경우에는 보통 행정부서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먼저 자천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추천해주셔도 좋고. 잘 안하려고 하시기도 해서, 혹시 행정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 간사 오원석

예, 그동안은 강인영 이사님과 김민호 이사님, 그리고 노문섭 감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 진흥원에 가까이 계시고, 또 상시적으로 저희와 연락이 가능하신 분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백이사님과, 이상백 이사님께서 아까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민호 이사님께서도 2년 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문섭 감사님 가능하시면 같이 검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감사님이야 당연히 하시는데, 어떻게, 사실 이 부분은 추천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행정실의 의견을 반영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사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사 일동

좋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감사합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흥원 이사회 회의록의 기명이사로 김민호 이사님과 이상백 이사님, 노문섭 감사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없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흥원 이사회 회의록의 기명이사로 김민호 이사님과 이상백 이사님, 노문섭 감사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대행 윤동현

다음은 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이 되실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천 또는 추천?

○ 간사 오원석

일단, 한 번 의향을 여쭙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만한 분이 계시는지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스스로 자천하실 분?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이사님?

○ 이사 이상백
제가 하겠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이상백 이사님.

○ 이사 이상백
자격에 하자 없습니까?

(일동 웃음)

○ 간사 오원석
예, 전혀 없습니다.

○ 이사 이종원
진흥원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 간사 오원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세 번 정도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7인의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원회의를 통해서 응모자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공고일정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서 공고가 올라 갈 것이고요,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접수된 인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7월 첫째 주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석을 해주시면 되고, 7월 둘째 주 정도에 면접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심사까지 총 전원회의, 서류심사, 그 다음에 면접심사까지 참석이 가능하신 분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그런데 궁금한게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추천해요?

○ 간사 오원석
혹시나 이사님들께서 아시는 청소년관련 전문가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없으면 우리가 진흥원에 일임을 해도 되는 것인지?

○ 간사 오원석
예, 그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더 감사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는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일단은 이상백 이사님께서 자천을 하셨고, 또 스스로 한 번 해 보시겠다 하는 이사님 안계십니까?

아 안계시네요...

(일동 웃음)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그러면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이사 이종원

박진규 이사님을 추천합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지금 이상백 이사님은 자천을 하셨고, 박진규 이사님은 추천이 됐는데 추가로 하실 이사님들 계십니까? 아마, 경험 상 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일동 웃음)

○ 간사 오원석

이사장님, 외부전문가 추천을 저희 진흥원에 일임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외부추천 어떻게 가능한지?

○ 간사 오원석

백석대학교에 김호영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 전공이십니다. 외부전문가는 말 그대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현장에서 많은 연구활동을 하시는 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흥원에 일임을 해주신다고 하면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김호영 교수님을 추천 드립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어떻습니까? 이사님들

○ 이사 일동

좋습니다.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님들께서 자천, 또 추천해주신 이상백 이사님과 박진규 이사님, 그리고 백석대에서 청소년관련 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김호영 교수님을 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예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백 이사님과 박진규 이사님, 그리고 김호영님을 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봉 3타

기타안건

○ 이사장 대행 윤동현

이상으로 진흥원에서 제안한 8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칩니다. 제안된 안건 이외에 논의하고 싶은 안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박진규

안건은 아니고요, 없는 상황 속에 직원수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직원 티오를 확보하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진흥원 담당자들을 격려 해줬으면 좋겠다는

○ 이사장 대행 윤동현

격려요?

○ 이사 박진규

격려의 박수를

○ 이사장 대행 윤동현

박수요. 예, 원장님도 안계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청소년진흥원은 저도 여성가족 정책관을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사실.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를 이사님들께서 한 번 해주시면

(일동 박수)

마무리

○ 이사장 대행 윤동현

논의할 안건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으로 이사회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흥원에서는 오늘 이사님들의 의견을 진흥원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고 우리 도 청소년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이사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3차 임시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봉 3타